2025년도 제25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5. 10. 28. 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성주(분과위원장), 강태욱, 손수호, 안효질, 최태경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5-24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박현주 전문위원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09건(안건번호 제2025-243869호~24517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5-243869호(순번 1번)는 블로그를 통해 영어 원서의 음원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음원을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5-243870호(순번 2번)는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 카페에서 공유한 사안으로, 공유 중인 불법복제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5-243871호~243890호(순번 3~22번)는 블로그 및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안건번호 제2025-243891호~245177호(순번 23번 이하)는 모두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김성주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제25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5-24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 여부 결정

- 김성주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 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의견 없음.

- 박현주 전문위원: 저작물명이나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 등은 비식별 처리하도록 하겠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심의 안건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쪽수를 기재하고 비공개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등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 안건은 25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469개의 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로 총 1,309건의 안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를 통해 영어 원서의 음원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1번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음원을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

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 및 제2호에 따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경우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조 제1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순번 1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을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 파일을 카페에 게시하여 공유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2번은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른 사적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저작물의 상당한 분량을 이용하고 있어 원저작물을 대체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 및 제2호에 따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경우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조 제1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조회수에 대하여 질의함.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채증자료상 조회수는 7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순번 2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을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번 내지 22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 및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3번 내지 22번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 및 제2호에 따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조 제1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순번 3번 내지 22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 내지 22번은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3번 이하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탁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62번(‘탁류’)은 2025년 9월에 공개하여 디즈니플러스에서 서비스 중인 국내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2개 화를 400포인트에 판매 중임.

(‘8번 출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307번(‘8번 출구’)은 2025년 10월에 개봉하여 2025년 10월 28일 기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에서 상영 중인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370포인트에 판매 중임.

순번 23번 내지 1309번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순번 23번 이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순번 23번 내지 1309번 모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이므로 가결에 동의하며,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3번 내지 130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5-243869호(순번 1번), 제2025-243870호(순번 2번), 제2025-243871호~243890호(3번~22번), 제2025-243891호~245177호(순번 23번~130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김성주 분과위원장이 제25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5년 제25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11. 4.

분과위원장 김성주

위원 강태욱

위원 손수호

위원 안효질

위원 최태경